◉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 제2026-273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형적·반복적이거나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은 [별표]에 따라 위원장에게 처리 권한 위임(제4조·제5조제1항)

나. 위원장은 위임받은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처리의 효과는 위원회에 귀속(제5조제2항·제3항)

다. 위원회는 필요 시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 결과를 보고받거나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 가능(제5조제4항)

라. 심의·의결사항 외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처리하되, 위원회는 필요 시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결과를 보고받거나 해당 사항을 심의·의결 가능(제6조제1항·제2항)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premise03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 02-2110-13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